



군산동고등학교

# 가정통신문

발행일 : 2018년 4월 3일  
발행인 : 학 교 장 김일주  
담당자 : 평가담당 박세윤

## 2018학년도 군산동고등학교 출결상황 관리 규정 및

### 정기고사 인정점 산출 규정 안내

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드립니다.

다음은 2018학년도 군산동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.  
학생과 학부모님 모두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출결과 관련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1 학생 출결상황 관리 규정

- 가. 지각 :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(08:30)까지 출석[소속 학급 교실에 입실]하지 않은 경우로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 이후부터 하교시각(16:30) 사이에 등교를 하면 지각으로 처리한다. 단, 지각의 사유는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, 무단, 기타로 처리한다.
- 나. 조퇴 :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(16:30)전에 하교하는 경우이며,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(08:30)과 하교시각(16:30) 사이에 하교한 경우에 조퇴로 처리한다. 단, 조퇴의 사유는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, 무단, 기타로 처리한다.
- 다. 결과 :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, 결과 처리한다. 단, 결과의 사유는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, 무단, 기타로 처리한다.

#### \* 무단 결과로 처리하는 경우

- 1) 수업 시간에 교과담당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행동을 하여 교사로부터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
- 2) 교사(담임교사, 교과담당교사 등)가 교실에 들어와 출석을 확인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5분 이상 늦게 들어온 경우
- 3) 수업(또는 조·종례)이 종료되기 전에 교과담당(담임)교사의 허락 없이 교실을 나가 수업(또는 조·종례)이 종료될 때까지 참석하지 않은 경우

라.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.

- 1) 지진, 폭우, 폭설, 폭풍,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 등(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)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
- 2)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
- 3)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“학교 · 시도교육청 · 국가를 대표한 경기, 경연대회 참가, 산업체 실습과정(현장실습), 훈련 참가, 교환학습, 현장(체험)학습, 「학교보건법」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” 출석하지 못한 경우
- 4) 초 ·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(학생의 징계 등)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, 사회봉사, 특별교육이수 기간
- 5) 초 ·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(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)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,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
- 6)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

구 분	대 상	일 수
결 혼	○ 형제, 자매	1
입 양	○ 본인	20
사 망	○ 부모 및 부모의 부모	5
	○ 부모의 조부모·외조부모	2
	○ 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	
	○ 부모의 형제·자매	1

- 7)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

마. 질병으로 인한 결석

- 1)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(의사 소견서,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,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)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
- 2) 다만,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(학부모 의견서, 처방전, 담임교사 확인서 등)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
- 3)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

바. 무단 결석

- 1)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(태만, 가출, 고의적 출석 거부,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·도피 등)
- 2) 초 ·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(학생의 징계 등)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

사. 기타 결석

- ① 부모 · 가족 봉양, 가사 조력,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
- ②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
- ③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

## 2

## 인정점 산출 방법

- ① 인정점 산출은 정상적인 평가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② 지필평가 인정점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기준점수는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 예를 들어 당해 학년 동일 학기에서 결시 전에 시행한 고사 성적이 있는 경우 그 고사 성적을, 당해 학년 동일 학기에서 결시 전에 시행한 성적이 없는 경우는 결시 이후 시행하는 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아래 ⑤항의 비율을 적용하여 부여한다.
- ③ 학기 내에 지필고사나 수행평가에 단 1회도 응시하지 못하여 지필평가 최종인정점 산출을 위한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지필평가 성적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기준점수를 정한다.

1순위: 이전 학기 내 동일교과의 성적

2순위: 가장 유사한 교과의 성적 (동일 시수 과목을 우선적용)

3순위: 나머지 응시 과목의 지필고사 평균점수

- ④ 기준점수를 이용하여 최종 인정점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.

### \* 평균점수 비율 활용 방법

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

$$\text{최종 인정점} = \text{기준점수} \times \frac{\text{결시고사 평균}}{\text{기준고사 평균}} \times \text{인정점 부여비율}$$

과목	기준고사(1차고사)		평균	최종 인정점
	평균	기준점수		
수학	68.0	65	62.3	47.64

\* 1학기 2차고사를 질병 결시한 학생의 최종 인정점 계산

$$1) 68.0 : 65 = 62.3 : \text{인정기준점수}$$

$$2) \text{인정기준점수} = (65 \times 62.3) / 68 = 59.55$$

$$3) \text{인정기준점수} \times 0.8(\text{병결 인정점 부여비율}) = 47.64$$

$$4) \text{최종 인정점} = 47.64$$

### \*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인정점 부여 방법

- ②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, 정상적으로 평가에 응시한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기준점수를 선택할 수 있다. 결정된 내용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산입하고 공지한다.

- 1) 해당 학생의 나머지 응시 과목의 지필고사 평균점수를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
- 2) 전과목 결시로 인하여 기준점이 없는 경우는 해당과목의 전체 학생 성적 평균을 기준점으로 부여
- 3) 동일 교과의 평균점수를 기준점으로 부여
- 4) 동일 학기의 전과목 평균 점수를 기준점으로 부여
- 5) 선택과목이 서로 다른 경우 동일 과목으로 인정하여 기준점으로 부여

## ⑤ 인정비율 부여 방법

### 1) 100%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(일 단위로 적용)

- 가) 지진, 폭우, 폭설, 폭풍, 해일 등의 천재지변, 법정 감염병(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)으로 인한 결석
- 나)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석
- 다)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및 경연대회 참가, 산업체 실습과정(현장실습), 훈련 참가, 교환학습 등으로 인한 결석
- 라)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
- 마) 공상으로 인한 결석
- 바)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31조(학생의 징계 등) 제1항 및 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, 사회봉사, 특별교육이수 기간 중의 결석
- 사)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6조(피해학생의 보호)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석으로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일시보호, 치료를 위한 요양 기간 중의 결석
- 아)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결석

### 2) 80%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

- 가) 질병으로 인한 결석(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및 의견서(의사 소견서,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,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) 또는 담임교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)

### 3) 70%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

- 가)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에 의한 결석(담임교사 의견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)

(예 : 간병, 부모 및 가족 봉양, 부득이한 개인 사정 등 담임교사 확인 의견서 첨부)

### 4) 해당학년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(차하점의 기준: 최하점보다 1점 낮은 점수)으로 부여하는 경우: 무단결석, 무단지각, 무단결과

### 5) 0점으로 처리하는 경우

- 가)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를 한 해당 과목
- 나)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
- 6) 그 이외의 기타 결시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점을 부여한다.

2018년 4월 3일

군산동고등학교장

